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11. 16 선고 2021가단1442 판결 [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임야 62㎡ 중 별지2 도면 표시 34, 19, 20, 21, 35, 26, 27,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ㄷ) 부분 7㎡ 지상 시멘블럭조 스테트지붕 주택을 철거하고, 위 선내 (ㄷ) 부분 7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 ‘별지 도면’은 ‘별지2 도면’으로 본다)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편병호

별지